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11.(금)

검 토 안 건	발 의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승인안(보건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구청장

열정으로 열일하는 열린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검 토 보 고 서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안 건 명

가. 2025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안

나. 2025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안건번호

의안번호 : 제26-62호, 제26-63호

3.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26년 8월 21일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4. 회부일자

회부일자 : 2026년 8월 24일

5.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4조(결산의 수행)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마.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Ⅰ. 총괄개요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
마 포 구	**1,077,820,499,745**	**1,113,716,011,589**	**1,084,637,135,369**	**27,126,474,550**	**97.4**
일 반 회 계	1,030,609,107,225	1,055,109,822,526	1,033,634,562,976	19,924,601,190	98
특 별 회 계	47,211,392,520	58,606,189,063	51,002,572,393	7,201,873,360	87
보 건 소	**21,927,835,000**	**21,857,278,650**	**21,822,761,350**	**34,517,300**	**99.8**
일 반 회 계	21,927,835,000	21,857,278,650	21,822,761,350	34,517,300	99.8
특 별 회 계	해당없음				

※ **수납률**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19억 2,783만 5천원으로 이는 마포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의 2.13%를 차지하는 수치임. 징수결정액은 218억 5,727만 8,650원이고 이 중 99.8%인 218억 2,276만 1,350원을 수납하고, 3,451만 7,300원이 미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집행률 (%)
마 포 구	**1,077,820,499,745**	**964,593,934,960**	**37,342,282,515**	**22,406,954,348**	**53,477,327,922**	**89.49**
일반회계	1,030,609,107,225	925,433,769,322	36,198,258,705	22,212,176,148	46,764,903,050	89.79
특별회계	47,211,392,520	39,160,165,638	1,144,023,810	194,778,200	6,712,424,872	82.94
보 건 소	**34,798,784,000**	**32,900,568,878**	**711,982,000**	**560,830,390**	**625,402,732**	**94.55**
일반회계	34,798,784,000	32,900,568,878	711,982,000	560,830,390	625,402,732	94.55
특별회계	해당없음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47억 9,878만 4천원(마포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중 3.38% 차지)이며, 이 중 329억 56만 8,878원을 지출(집행률 94.55%)하고, 7억 1,198만 2천원은 이월, 5억 6,083만 39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6억 2,540만 2,732원임.

Ⅱ.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세목별 조서 】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률 ㉰/㉯
합 계	21,927,835,000	21,857,278,650	21,822,761,350	34,517,300	99.8%
세 외 수 입	269,608,000	462,257,440	427,740,140	34,517,300	92.53%
경상적세외수입	91,947,000	142,241,460	142,241,460	0	100%
임시적세외수입	91,229,000	203,141,240	203,141,240	0	1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6,432,000	116,874,740	82,357,440	34,517,300	70.5%
조정교부금 등	555,578,000	555,578,000	555,578,000	0	100%
보 조 금	20,629,504,000	20,354,992,000	20,354,992,000	0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3,145,000	484,451,210	484,451,210	0	100%

□ 실제수납액 내역

구 분	내 역
경상적세외수입	- 보건의료수수료 : 1억 1,175만 8,280원 - 기타이자수입 : 3,048만 3,180원
임시적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8,765만 3,530원 - 위탁비반환수입 : 1억 786만 6,760원 - 그외수입 : 762만 950원

구 분	내 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 과징금 : 712만 2천원 - 기타과태료 : 7,523만 5,440원
자치구조정교부금등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5억 5,557만 8천원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25억 9,710만 6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7억 1,814만 7천원 - 기금 : 41억 7,887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등	- 시·도비보조금등 : 128억 6,086만 7천
보전수입등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2억 7,412만 2,850원 -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 2억 1,032만 8,360원

❍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19억 2,783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8억 5,727만 8,650원이고 이 중 218억 2,276만 1,350원을 수납함. (수납률: 99.8%)

❍ **실제수납액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등이 203억 5,499만 2천원(93.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등 5억 5,557만 8천원(2.5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8,445만 1,210원(2.22%), 세외수입 4억 2,774만 140원(1.96%) 순임.

❍ **미수납액**은 세외수입(과태료) 총 3,451만 7,300원으로, 내역은 위생과 3,024만 3,700원과 건강동행과 427만 3,600원임.

미수납액 사유는 납세태만 2,328만 7,300원, 납기미도래 1,123만원임.

【 부서별 세입 결산 】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
합 계	**21,927,835,000**	**21,857,278,650**	**21,822,761,350**	**34,517,300**	**99.84**
보건행정과	3,458,317,000	3,464,361,330	3,464,361,330	0	100
위 생 과	569,203,000	598,512,530	568,268,830	30,243,700	94.95
건강동행과 (건강증진과)	17,099,767,000	16,991,201,640	16,986,928,040	4,273,600	99.97
의 약 과	800,548,000	803,203,150	803,203,150	0	100

□ 전년도 대비 세입 추이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2024년도 결산		**19,335,942,000**	**19,561,239,530**	**19,524,264,030**	**36,975,500**	**99.81%**
증감	금 액	2,591,893,000	2,296,039,120	2,298,497,320	△2,458,200	
	비 율	13.4%	11.73%	11.77%	△6.65%	

※ **세입예산액:** 예산액+전년도 이월액, **수납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 보건소 소관 세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은 218억 2,276만 1,350원으로 전년도(195억 2,426만 4,030원) 대비 22억 9,849만 7,320원 증가함.

❍ 보건소 과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는 건강동행과로 총 세입예산액(실제수납액)은 169억 8,692만 8,040원(수납률 99.97%)이며, 세입예산이 가장 적은 과는 위생과로 총 세입예산액(실제수납액)은 5억 6,826만 8,830원(수납률 94.95%)임.

2. 세출결산

【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 원)

부서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집행률
합 계	34,798,784,000	32,900,568,878	711,982,000	560,830,390	625,402,732	94.55%
보건행정과	5,812,739,000	5,301,950,570	204,982,000	138,334,720	167,471,710	91.21%
위 생 과	975,030,000	955,327,311	0	2,402,110	17,300,579	97.97%
건강동행과 (건강증진과)	26,045,410,000	24,847,637,807	424,000,000	416,118,370	357,653,823	95.4%
의 약 과	1,965,605,000	1,795,653,190	83,000,000	3,975,190	82,976,620	91.35%

□ 전년도 대비 세출 추이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집행률
2024년도 결산		33,722,082,000	31,585,015,785	0	1,304,886,700	832,179,515	93.66%
증감	금액	1,076,702,000	1,315,553,093	711,982,000	△744,056,310	△206,776,783	
	비율	3.19%	4.16%	100%	△57.02%	△24.84%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47억 9,878만 4천원이며, 329억 56만 8,878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7억 1,198만 2천원, 보조금 반납금 5억 6,083만 39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540만 2,732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4.55%임. 전년도 집행률 93.66%보다 0.89% 높아짐.

❍ 보건소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위생과로 전체예산 9억 7,503만원 가운데 9억 5,532만 7,311원을 지출하여 97.97%의 집행률을 보였고, 집행률이 가장 낮은 부서는 보건행정과로 전체예산 58억 1,273만 9천원 가운데 53억 195만 570원을 지출하여 91.21%의 집행률을 보임.

3. 집행잔액(불용액)

【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 】

(단위 : 원)

부 서 명	집 행 잔 액	원인별 잔액 현황				
		보 조 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합 계	625,402,732	250,329,665	19,672,000	13,780	0	355,387,287
보건행정과	167,471,710	44,748,790	10,170,000	0	0	112,552,920
위 생 과	17,300,579	1,996,920	235,000	0	0	15,068,659
건강동행과 (건강증진과)	357,653,823	202,070,565	4,640,000	13,780	0	150,929,478
의 약 과	82,976,620	1,513,390	4,627,000	0	0	76,836,230

○ 2025회계연도 보건소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347억 9,878만 4천원의 3.14%인 6억 2,540만 2,732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8억 3,217만 9,515원보다 2억 677만 6,783원 감소함.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결산서 상 집행잔액의 발생원인은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6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1],

1)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출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2. 예산절감 :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 보건소 소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잔액(3억 5,538만 7,287원)’, ‘보조금 정산잔액(2억 5,032만 9,665원)’, ‘예산절감액(1,967만 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1만 3,780원)’ 순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4. 집행률 저조사업

【 집행률 70% 미만 사업 - 13건 】

(단위 : 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집행률 (㉯/㉮)
보건행정과 (2건)	마음상담소 설치 운영	200,000,000	14,947,000	185,053,000	0	0	7.47%
	기 본 경 비	128,751,000	83,840,510	0	0	44,910,490	65.1%
건강동행과 (9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600,000	0	0	450,000	150,000	**0%**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11,644,000	1,455,650	0	10,188,350	0	12.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74,188,000	50,995,620	0	23,185,850	6,530	68.7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59,240,000	238,403,000	0	0	120,837,000	66.36%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744,000	1,116,000	0	2,315,100	2,312,900	19.4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2,800,000	1,679,300	0	840,520	280,180	59.97%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	21,580,000	2,287,150	0	19,292,850	0	10.6%
	자체예방접종사업	198,594,000	135,635,395	0	0	62,958,605	68.29%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424,000,000	0	424,000,000	0	0	**0%**
의약과 (2건)	**건강장수센터 운영**	83,000,000	0	83,000,000	0	0	**0%**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	1,200,000	480,000	0	720,000	0	40%

※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미포함)

○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13건**이며,

○ **사업 중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집행률 0%)은 3건**으로, 건강동행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60만원,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4억 2,400만원과 의약과 ‘건강장수센터 운영’ 8,300만원 임.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 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및 ‘건강장수센터 운영’ 사업은 2025. 11. 26. 건강도시 서울 조성사업(서울체력 9988)과 건강도시 서울 조성사업(서울건강장수센터)으로 각각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임.

【 집행잔액(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 1건 】

(단위 : 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건강동행과 (1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59,240,000	238,403,000	0	0	120,837,000	66.36%

○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건강동행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국:시:구=30:35:35)’ 1건으로, 예산현액 3억 5,924만원 중 2억 3,840만 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083만 7천원**임.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통보(2025.5.26.)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2025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감추경을 통해 불용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임.

Ⅲ. 예산이용 · 전용 · 변경사용 · 이체

1. 예산 이용 : 없음

2. 예산 전용

❍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의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전용금액은 3,664만 8천원**임.

< 예산전용 내역 >

(단위 : 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전용금액	사 유
총 4건			36,648,000	
보건행정과(2건)	통합민원서비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00	'2025년 대규모 행사 및 축제 의료지원 용역' 관련 의료지원 요청 시간 증가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보건행정과-15302, 2025.8.12.)
		201-01 사무관리비	7,000,000	
	통합민원서비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613,000	보건소 진료의사 결원 및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제 의사 긴급 채용 (보건행정과-16668, 2025.9.3.)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613,000	
건강동행과(2건)	국가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및회복비	△17,558,000	2025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시행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한 백신냉장고 구매 (건강동행과-20726, 2025.11.3.)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558,000	
	건강증진사업	301-11 행사실비지원금	△477,000	금연구역 단속용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 안전관리 물품 구매 (건강동행과-22981, 2025.12.3.)
	금연구역운영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77,000	

3.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건소 '25년도 예산변경 사용건수는 **총 14건, 1억 5,355만원**으로 나타남.

< 예산변경 내역 >

(단위: 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경일자	사유
합계	**총 14건**	**△153,550,000**	**153,550,000**		
보건행정과 (4건)	건강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1,800,000		2026-02-03	2025년 대규모 행사 및 축제 의료지원 용역 변경계약 (보건행정과-20047,2025.10.27.)
	통합민원서비스 (사무관리비)		1,800,000		
	건강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480,000		2025-12-01	건강도시 마포 특강 강사료 지급(보건행정과-21838, 2025.11.21.)
	건강도시 조성 (행사운영비)		480,000		
	방역소독 (사무관리비)	△7,300,000		2025-12-08	'2025년 설치류(쥐) 방제 지원사업' 관련 구서 방제 약품 추가 구매(보건행정과-22839, 2025.12.4.)
	방역소독 (재료비)		7,300,000		
	방역소독 (자산및물품취득비)	△4,788,000		2025-11-18	방역반 상황실 냉난방시설 설치(보건행정과-21348, 2025.11.13.)
	방역소독 (시설비)		4,788,000		
건강동행과 (9건)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의료비 및 회복비)	△4,526,000		2025-11-03	2025년도 임산부 등록자 증가에 따른 영양제 부족 예산 확보(건강동행과-20576, 2025.10.31.)
	햇빛센터 운영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의료비 및 회복비)		4,526,00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및 회복비)	△12,478,000		2025-09-08	2025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예산 확보(건강동행과-16831, 2025.9.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및 회복비)		12,478,000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경일자	사유
건강동행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790,000		2025-09-08	2025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예산 확보(건강동행과-16831, 2025.9.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및 회복비)		3,790,00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1,270,000		2025-09-0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예산 확보(건강동행과-16290, 2025.8.2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1,270,000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의료비 및 회복비)	△49,982,000		2025-11-03	2025년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예산 확보(건강동행과-20576, 2025.10.31.)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49,982,000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공공운영비)	△60,000		2025-02-20	2025년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른 공무직 복지포인트 재산정 후 부족예산 확보(건강동행과-2944, 2025.2.17.)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60,000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공공운영비)	△599,000		2025-09-29	금연클리닉 금연 6개월 성공자 증가에 따른 관리물품 구매 예산 확보(건강동행과-17987, 2025.9.26.)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599,000		
	금연구역운영관리 (공공운영비)	△477,000		2025-11-27	금연구역 운영관리 사업 관련 단속 안전관리 물품구매(건강동행과-22478, 2025.11.26.)
	금연구역운영관리 (사무관리비)		477,000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공공운영비)	△4,000,000		2025-04-02	2025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시스템 유지보수비 서울시 전액 부담에 따른 기 편성한 유지보수비 타 통계목 충당 (건강동행과-6143, 2025.3.31.)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4,000,000		
의약과 (1건)	아현보건지소 운영 (공공운영비)	△2,000,000		2025-11-19	대사증후군 검진 독려, 건강관리 교육 및 홍보자료 신규 제작(의약과-18391, 2025.11.17.)
	아현보건지소 운영 (사무관리비)		2,000,000		

4. 예산 이체 : 없음

Ⅳ. 예산 이월 현황

1.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 2025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3건, 이월액은 6억 9,205만 3천원이 발생함.

❍ **부서별 내역**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3건)		707,000,000	14,947,000	692,053,000	
보건행정과 (2건)					
마음상담소 설치 운영	시설비	140,000,000	14,947,000	125,053,000	마음상담소 조성 설계 용역 준공이 '25. 12월 초로 연도 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함
마음상담소 설치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000	0	60,000,000	
건강동행과 (8건)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7,727,000	0	97,727,000	2025. 11. 26. 건강도시 서울 조성사업(서울체력 9988)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함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5,833,000	0	55,833,000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440,000	0	1,440,000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6,000,000	0	6,000,000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6,000,000	0	6,000,000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12,000,000	0	212,000,000	2025.11.26. 건강도시 서울 조성사업(서울체력 9988)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함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시설비	30,000,000	0	30,000,000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00	0	15,000,000	
의약과 (3건)					
건강장수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300,000	0	51,300,000	2025년 11월 26일 건강도시 서울조성사업(서울건강장수센터)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함
건강장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1,700,000	0	21,700,000	
건강장수센터 운영	의료 및 회복비	10,000,000	0	10,000,000	

2.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은 보건행정과 총 1건으로, 사고이월액은 1,992만 9천원임.

❍ **부서별 내역**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건)		44,298,000	20,965,940	19,929,000	
보건행정과 (1건)					
방역소독	사무관리비	44,298,000	20,965,940	19,929,000	스마트 IoT 구서 장비 설치 운영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026. 12. 31.)

Ⅴ. 기금 결산

❍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음.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 〉

(단위 : 원)

구 분 / 기 금 명	'24년말 조 성 액 ㉮	2025년도 증감액			'25년말 조 성 액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계	2,656,091,102	△110,266,835	181,974,575	292,241,410	2,545,824,267
식품진흥기금	2,656,091,102	△110,266,835	181,974,575	292,241,410	2,545,824,267

❍ 2024년도말 조성액이 26억 5,609만 1,102원이며, 2025년에 1억 8,197만 4,575원을 조성하고, 2억 9,224만 1,410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억 4,582만 4,267원임.

❍ 식품진흥기금 수입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 기금	수 입				
	계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식품진흥기금	2,838,065,677	27,651,721	2,656,091,102	94,858,754	59,464,100

- 수입은 예치금회수(93.5%), 이자수입(3.34%), 기타수입(2.09%), 융자금회수(0.97%) 순임.

❍ 식품진흥기금 지출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 기금	지 출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식품진흥기금	2,838,065,677	102,241,410	190,000,000	2,545,824,267

- 지출은 예치금(89.7%), 융자성사업비(6.69%), 비융자성사업비(3.6%) 순임.

❍ 수입결산

- 수입계획 현액: 24억 3,026만 3천원 중

징수결정액: 28억 3,806만 5,677원이며,

실제수납액: 4억 780만 2,677원임

(단위 : 원)

세 목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수납증감액	증감률
합 계	**2,430,263,000**	**2,838,065,677**	**2,838,065,677**	**407,802,677**	**16.78%**
징수교부금수입	42,900,000	59,068,000	59,068,000	16,168,000	37.69%
공공예금이자수입	102,400,000	94,858,754	94,858,754	△7,541,246	△7.36%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50,000	2,651,721	2,651,721	2,001,721	307.9%
그 외 수 입	0	396,100	396,100	396,100	-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수입	25,000,000	25,000,000	25,000,000	0	-
예치금회수	2,259,313,000	2,656,091,102	2,656,091,102	396,778,102	17.56%

❍ 지출결산

- 지출계획액: 24억 3,026만 3천원 중

지출액: 28억 3,806만 5,677원임.

(단위 : 원)

세 목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2,430,263,000**	**0**	**2,430,263,000**	**2,838,065,677**	**115.3%**
사무관리비	53,655,000	0	53,655,000	25,237,000	47.04%
공공운영비	9,240,000	0	9,240,000	8,974,410	97.13%
기타보상금	82,500,000	0	82,500,000	53,570,000	64.9%
민간경상사업보조	14,460,000	0	14,460,000	14,460,000	100%
통화금융기관융자금	450,000,000	0	450,000,000	190,000,000	42.2%
예치금	1,820,408,000	0	1,820,408,000	2,545,824,267	139.8%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과「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원의 조달은 과징금 수입,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 집행내역은 안심, 관광식당, 모범음식점 지원물품 구매 등,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보험가입 및 우편요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의 사업비임.

❍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하는 일반예산과 달리 집행기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반면 예산의 변경사용이 용이하여 예산집행에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함.

❍ 따라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담보될 필요가 있음.

< 다 음 페 이 지 계 속 >

Ⅵ.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제도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는 **총 3건**으로, 지출액은 **1억 8,810만 8천원**임.

〔 예비비 사용내역 현황 〕

(단위 : 원)

구 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88,108,000**	**188,108,000**				
건강 동행과 (1건)	출산장려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149,808,000	149,808,000	0	0	2025-12-12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 확보 (건강동행과-20373, 2025.10.29.)
의약과 (2건)	의료기관 관리 (의료 및 회복비)	16,450,000	16,450,000	0	0	2025-03-13	2025년 설연휴 운영 병의원 및 약국 지원 (의약과-3557, 2025.2.28.)
	의약품 조제·투약 (의료 및 회복비)	16,450,000	16,450,000	0	0	2025-03-14	2025년 설연휴 운영 병의원 및 약국 지원 (의약과-3557, 2025.2.28.)

Ⅶ.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개선(권고) 사항

□ 보건소 소관 권고사항 목록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소관부서
1	성과지표의 목표치 개선 필요	보건행정과

1. 성과지표의 목표치 개선 필요

ㅇ 현황 및 문제점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방역소독(ha)	방역소독 실시면적의 합	2024	300	394	131%
		2025	350	471	135%

매년 목표치 130% 이상 달성함.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를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연속하여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임.

ㅇ 개선 및 권고사항

2024년도 중간성과평가 등을 통해 예상 달성률을 측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5년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과거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목표치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 다 음 페 이 지 계 속 >

Ⅷ. 검토 의견

❍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임.

따라서 결산은 예정된 계획인 예산과 집행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음.

❍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19억 2,783만 5천원 대비 실제수납액 218억 2,276만 1,350원으로 수납률은 99.8%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347억 9,878만 4천원 대비 329억 56만 8,878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55%로 전반적인 세입징수와 예산집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다만, 미수납액은 총 3,451만 7,300원으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부분이 위생과 과태료이며,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2,328만 7,3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만큼 체납원인 분석, 독촉 및 압류 등 체납처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47억 9,878만 4,000원 중 94.55%에 해당하는 329억 56만 8,87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540만 2,732원으로 이는 마포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1.34%를 차지하는 수준임. 특히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세출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는 “지출잔액”이 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에 56.82%에 해당하는 3억 5,538만 7,287원임.

❍ 또한 집행률 70% 미만 사업이 13개 사업으로, 마음상담소 설치운영(7.4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12.5%),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19.43%),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10.6%) 등은 낮은 집행률을 보이며, 특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건강장수센터 운영사업’은 집행률이 0%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미발생으로 이해되나, 나머지 두 사업은 전액 명시이월된 만큼 향후 사업추진 일정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지원 대상자 감소, 사업여건 변화 등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향후에는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예산변경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신축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로,

- 202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변경 현황은 예산 이용·이체는 없으며, <u>전용은 총 4건, 3,664만 8천원</u>이며, <u>예산변경사용은 14건, 1억 5,355만원</u>임. 이 중 보건행정과의 전용 2건은 모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전용한 건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전용 자체는 법령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당초 의회가 특정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의결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전

용의 불가피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보건행정과는 키오스크 구매 목적으로 편성한 자산및물품취득비(3,053만원)를 사무관리비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음. 당초 계획한 자산 취득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변경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추경 등을 통한 예산조정없이 전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고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수요를 면밀히 산정하고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해야할 것임.

❍ **보건소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총 13건, 6억 9,205만 3천원)과 사고이월(1건, 1,992만 9천원) **총 7억 1,198만 2천원**으로, 건강동행과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과 의약과 ‘건강장수센터 운영’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보건행정과 ‘방역소독’은 스마트 IoT 구서 장비 설치 운영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음.

❍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합리적인 예산확보 등 이월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보건소 소관 기금은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금액은 전년도말 대비 △4.15% 감소한 25억 4,582만 4,267원으로 사용금액은 2억 9,224만 1,410원임. 2025회계연도에는 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기금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수입과 지출 모두

예치금 비중이 높아 실제 사업 추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사업별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보건소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를 총 3건, 1억 8,810만 8천원**을 사용하였으며, 건강동행과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과 의약과 설연휴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병의원 및 약국 운영지원에 집행하였음.

-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국시비 추가 교부가 추경 이후에 이루어져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 설 연휴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지원은 명절기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한 행정수요로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한정적 재원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불용이 명백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감편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결산 결과와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적정 예산 편성과 효율적 재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장홍용 〉

1. 안 건 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 안건번호

의안번호 : 제26-82호

3.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26년 8월 21일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4. 회부일자

회부일자 : 2026년 8월 24일

5.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Ⅰ. 예산 규모

1.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마포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627억 1,12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206억 7,565만 4천원 대비 420억 3,560만원(4.57%)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9,213억 8,483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82억 1,655만 9천원(4.33%)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413억 2,641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1,904만 1천원(10.18%) 증가하였음.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962,711,254	920,675,654	42,035,600	4.57%
일 반 회 계	921,384,837	883,168,278	38,216,559	4.33%
특 별 회 계	41,326,417	37,507,376	3,819,041	10.18%
의료급여기금	1,105,896	793,426	312,470	39.38%
마포농수산물시장	12,846,607	11,151,737	1,694,870	15.20%
주차장	24,524,630	22,182,483	2,342,147	10.5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74,161	82,599	591,562	716.19%
건축안전	890,899	799,183	91,716	11.48%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1,284,224	2,497,948	△1,213,724	△48.59%

2.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액은 233억 7,23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2,384만 8천원(9.48%)이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3,372,304	21,348,456	2,023,848	9.48%
일 반 회 계	23,372,304	21,348,456	2,023,848	9.48%
특 별 회 계	해당없음			

❍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376억 2,005만 1천원으로, 마포구 전체 추경 예산의 3.9%이며, 기정예산보다 37억 9,665만 7천원(11.22%)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7,620,051	33,823,394	3,796,657	11.22%
일 반 회 계	37,620,051	33,823,394	3,796,657	11.22%
특 별 회 계	해당없음			

Ⅱ.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33억 7,23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3억 4,845만 6천원 대비 20억 2,384만 8천원(9.48%) 증가하였음.

○ 증감액 20억 2,384만 8천원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기정액 대비 3억 2,707만 8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기정액 대비 16억 9,677만원 증액하였음.

□ 재원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3,372,304	21,348,456	2,023,848	9.48%
세 외 수 입	178,001	178,001	0	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86,169	86,169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91,832	91,832	0	0
조 정 교 부 금 등	54,332	54,332	0	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4,332	54,332	0	0
보 조 금	23,139,971	21,116,123	2,023,848	9.58%
국 고 보 조 금 등	8,130,780	7,803,702	327,078	4.19%
시·도비보조금등	15,009,191	13,312,421	1,696,770	12.75%

□ 조직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구성비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3,372,304**	**100%**	**21,348,456**	**2,023,848**	**9.48%**
보 건 행 정 과	3,747,040	16.03%	3,563,319	183,721	5.15%
위 생 과	534,397	2.29%	0	0	0
건 강 증 진 과	18,104,908	77.46%	16,264,370	1,840,538	11.32%
의 약 과	985,959	4.22%	986,370	△411	0.04%

○ 보건행정과는 37억 4,7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372만 1천원, 5.15% 증액

○ 위생과는 추경 편성사항 없음.

○ 건강증진과는 181억 490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4,053만 8천원 11.32% 증액, 보건소 세입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의약과는 9억 8,595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1만 1천원, △0.04% 감액

□ 세입예산안 주요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보건행정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고보조금등]	6,064	6,500	△43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등]	13,480	10,280	3,200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국고보조금등]	291,105	368,770	△77,66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금등]	69,600	33,600	36,000
	암조기검진사업 [국고보조금등]	467,400	377,258	90,142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국고보조금등]	34,500	29,610	4,890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국고보조금등]	6,000	0	6,00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도비보조금등]	81,200	39,200	42,000
	암조기검진사업 [시·도비보조금등]	545,300	440,134	105,166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 [시·도비보조금등]	123,500	117,000	6,500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시·도비보조금등]	75,597	75,885	△288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시·도비보조금등]	17,250	14,805	2,445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등]	6,740	5,140	1,600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시·도비보조금등]	145,552	184,385	△38,833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시·도비보조금등]	3,000	0	3,000
건강증진과	출산장려지원사업(첫만남이용권 지급) [국고보조금등]	1,942,663	1,863,320	79,343
	지역사회재활중심사업 [국고보조금등]	7,040	6,498	542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보조금등]	103,840	93,904	9,936
	인력운영비(통합방문간호사) [국고보조금등]	363,678	358,524	5,15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등]	19,021	16,000	3,021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금등]	15,000	10,000	5,00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고보조금등]	21,000	15,000	6,00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등]	112,343	96,568	15,775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등]	700	1,100	△400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국고보조금등]	7,859	7,082	777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고보조금등]	1,581,078	1,441,251	139,827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시·도비보조금등]	1,810,862	1,510,805	300,05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등]	22,191	18,667	3,52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시·도비보조금등]	17,500	11,666	5,83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시·도비보조금등]	24,500	17,500	7,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환사업)[시·도비보조금등]	1,944,819	1,392,316	552,503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등]	1,116,890	646,500	470,390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등]	149,367	130,963	18,40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시·도비보조금등]	350	550	△200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도비보조금등]	8,581	3,542	5,039
	국가예방접종 실시 [시·도비보조금등]	1,844,587	1,681,459	163,128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시·도비보조금등]	40,753	37,772	2,98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시·도비보조금등]	2,112	1,949	163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출산장려지원사업(첫만남이용권 지급) [시·도비보조금등]	1,187,016	1,140,340	46,676
	인력운영비(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도비보조금등]	113,815	115,298	△1,483
	인력운영비(통합방문간호사) [시·도비보조금등]	170,793	169,246	1,547
의 약 과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교육 [국고보조금등]	1,467	1,461	6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국고보조금등]	1,000	1,034	△34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등]	8,832	9,216	△384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시·도비보조금등]	34,815	34,814	1

○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액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출산·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분야의 보조재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76억 2,00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2,339만 4천원 대비 37억 9,665만 7천원(11.22%) 증가하였음.

□ 조직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구성비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7,620,051	100%	33,823,394	3,796,657	11.22%
보 건 행 정 과	6,257,535	16.63%	5,704,711	552,824	9.69%
위 생 과	981,251	2.61%	974,270	6,981	0.72%
건 강 증 진 과	27,735,237	73.72%	24,611,694	3,123,543	12.69%
의 약 과	2,646,028	7.03%	2,532,719	113,309	4.47%

○ 부서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건강증진과**가 277억 3,523만 7천원으로 보건소 전체 예산의 약 73.7%를 차지하여 가장 큰 규모이며, 기정액 대비 31억 2,354만 3천원(12.7%) 증가하였음.

○ **보건행정과**는 62억 5,753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282만 4천원(9.7%) 증가하였음.

○ **의약과**는 26억 4,602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30만 9천원(4.5%)증가하였음.

○ **위생과**는 9억 8,125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98만 1천원(0.72%) 증가하였음.

□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사유 및 내역
	보건행정과 (10건)				
자체	통 합 민 원 서 비 스	213,738	133,661	80,077	o 특수구급차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 2026년 말 현재 운행중인 특수구급차(1대)의 운행연한(11년) 만료됨
매칭	희 귀 난 치 성 질 환 자 의 료 비 지 원 사 업	232,000	112,000	120,000	o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예탁금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기)30/ 시35/ 구35)
매칭	암 조 기 검 진 사 업	1,558,000	1,257,525	300,475	o 암검진비 건강보험공단 예탁 o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반영 (국(기)30/ 시35/ 구35)
매칭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 환 사 업)	190,000	180,000	10,000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반영 (시65/ 구35)
매칭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29,083	229,955	△872	o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비 o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반영 (국50/ 시33/ 구17)
매칭	정 신 건 강 복 지 센 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69,000	59,220	9,780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기)50/ 시25/ 구25)
매칭	정 신 질 환 자 치 료 비 지 원 사 업	26,960	20,560	6,400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기)50/ 시25/ 구25)
매칭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582,210	737,540	△155,330	o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50/ 시25/ 구25)
매칭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12,000	0	12,000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기)50/ 시25/ 구25)
	반 환 금 기 타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	170,294	0	170,294	o 이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
	위 생 과 (1 건)				
	반 환 금 기 타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	6,981	0	6,981	o 이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사유 및 내역
	건강증진과 (22건)				
자체	햇빛센터 운영(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131,351	121,351	10,000	o 전년대비 등록 임산부 8% 증가에 따른 추가 영양제 등 구매 필요
매칭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2,785,942	2,324,315	461,627	o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o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증가로 예산 부족분 증액 o 서울시 변경내시 예정
매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63,403	53,334	10,069	o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o 신청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증액
매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0,000	33,332	16,668	o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o 신청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증액
매칭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70,000	50,000	20,000	o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o 신청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증액
매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2,593,092	1,856,421	736,671	o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증가로 예산 부족분 증액 o 서울시 변경내시 예정
매칭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2,256,413	1,315,633	940,780	o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o 집행률: 99.7%(2026.5.30.기준), 예산 부족으로 바우처 미정산 금액 발생
매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411,077	358,494	52,583	o 검사비 지원 o 본예산 소진으로 06.29부터 신규 신청 중단된 상태로 증액된 변경내시 반영
매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1,400	2,200	△800	o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o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매칭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22,590	20,625	1,965	o 행사실비지원금(301-11): 부모모임 확대 15회 → 20회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반영
자체	자체예방접종사업	260,630	205,630	55,000	o 백일해 예방접종 o 당초, 백일해 예방접종 신규 사업의 필요 예산중 50% 배정, 현재 사업비 부족 o 백신 단가 상승, 접종대상 목표(전년도 출생아수) 대비 당해년도 임신 증가에 따른 접종률 상승
매칭	국가예방접종 실시	5,270,252	4,804,169	466,083	o 확정내시에 따른 국(기)시비 반영 o 12세 남성청소년 HPV 및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확대시행, 예방접종 시행비 미지급금 예산증액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사유 및 내역
매칭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976,261	2,137,261	△161,000	o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o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 감소에 따른 코로나 목표 접종률 하향 조정
매칭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63,551	98,420	△34,869	o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o 공무직 복리후생비 구비 편성 1년 유예로 시비 보조금 교부
매칭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270,190	249,731	20,459	o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o 공무직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력 확보
매칭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4,080	12,996	1,084	o 사업 규모 확장 및 현재 예산 집행 소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매칭	건강장수센터 운영	131,970	127,187	4,783	o 통합돌봄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방문재활 인건비의 국·시·구비 (30:35:35) 매칭사업 구비 편성 필요 o 통합돌봄 장수센터 사업 개편에 따른 장수헬퍼 미운영으로 일반 보전금(기타보상금) 감추경 필요
매칭	출산장려지원사업	4,320,055	4,147,360	172,695	o 첫만남이용권 지급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반영 o 출생아 수 작년 동월대비 23.4% 증가 추세로 추가예산 확보 필요
매칭	인력운영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275,608	277,091	△1,483	o 확정내시에 따른 국(기)시비 반영 o 공무직 인건비: 2025년 공무직 임금협약 반영, 구비 부족분 시비 100% 충당
매칭	인력운영비 (통합방문간호사)	871,151	860,843	10,308	o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o 2025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
매칭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재활)	37,232	43,898	△6,666	o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공백(3개월) 발생에 따른 감추경
	반환금기타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	347,586	0	347,586	o 이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
	의 약 과 (6 건)				
매칭	아동치과치료지원사업	11,040	11,520	△480	o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반영 (시80 /구20)
매칭	방문구강관리후속지원사업(통합돌봄)	4,000	2,600	1,400	o 마포형 돌봄 통합 특화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국30 /시35 /구35)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사유 및 내역
매칭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교육	2,934	2,922	12	o 확정내시 반영 (국(기) 50/ 구 50)
매칭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2,000	2,068	△68	o 확정내시 반영 (국(기) 50/ 구 50)
매칭	인 력 운 영 비 (응 급 의 료 관 리)	84,335	84,334	1	o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반영
	반 환 금 기 타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2,444	0	112,444	o 이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

□ [자체] 주요 편성 사업

○ **보건행정과 '통합민원서비스' 사업**은 2억 1,373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특수구급차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8,007만 7천원을 증액하였음. 추경사유는 현재 보건소가 보유 운행 중인 특수구급차 1대의 운행연한(11년)이 2026년 12월 27일 만료됨에 따른 것임.

특수구급차는 법정 감염병 환자 이송 등 공공보건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이나, 기존 차량의 운행연한 도래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지 않고 추경에 전액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추경 의결 이후 계약·차량 제작 및 출고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도 내 집행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건강증진과 '자체예방접종사업'** 은 백일해 예방접종을 위해 5,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063만원을 편성하였음. 추경사유는 당초 백일해 예방접종 신규 사업의 필요 예산중 50%가 배정됨에 따른 현재 사업비 부족과 백신 단가 상승, 접종대상 목표(전년도 출생아수) 대비

당해년도 임신 증가에 따른 접종률 상승임. 자체예방접종사업은 백신단가 및 접종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는 인정되나, 향후에는 추경을 전제로 한 소요액 일부 편성보다는 연간 예상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매칭] 주요 편성 사업

○ **보건행정과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사업**은 2025년 12월 26일 확정내시에 따라 1,200만원 신규편성한 사업임. 본 사업은 동 단위 지역사회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개입·연계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홍보물품 구매, 우울 및 자살예방 관련 리플릿 구매, 생명존중안심마을 현판 제작) 4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간담회 등) 60만원, 민간위탁금(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700만원 임.

○ 건강증진과 소관 매칭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은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경비, 국가예방접종, 첫만남이용권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변경내시 및 사업수요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이 주요내용임. 이는 최근 출생아 증가(출생아 수 작년 동월대비 23.4% 증가 추세)와 임산부 증가(전년대비 8% 증가)로 특히 임신·출산 및 예방접종 관련 사업의 증액규모가 크게 나타남.

○ 국·시비 보조사업은 상급기관의 내시에 따라 구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되나,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기정액 대비 71.5%, 9억 4,078만원 증액) 등 본예산 대비 증액규모가 큰 사업은 당초 수요추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20~49세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소진으로 6월29일부터 신규신청이 중단되었고,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258만 3천원을 증액하였음. 이는 사업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민 수요가 높은 보건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만큼 당초 수요예측 및 예산규모 산정이 적정했는지 점검하고, 향후에는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추이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임.

Ⅲ.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및 변경내시 반영, 출산·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분야의 사업수요 증가,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음.

○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338억 2,339만 4천 원 대비 37억 9,665만 7천원 증가한 376억 2,00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건강증진과의 증액 규모가 31억 2,354만 3천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건강증진과는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경비, 국가예방접종,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및 예방접종 관련 사업의 증액이 두드러지며, 최근 출생아 증가와 보건서비스 이용 수요 확대가 재정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본예산 13억 1,563만 3천 원에서 22억 5,641만 3천 원으로 9억 4,078만 원 증액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7억 3,667만 1천 원 증액되는 등 모자보건 분야의 증가폭이 큰 편임.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증액 사유가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4% 증가한 것인데, 향후에는 개별 사업별로 수요를 산정하기보다는 출생아 수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이용 추이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건행정과의 ‘특수구급차 구입비’는 구민의 응급의료 및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필수 장비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차량의 운행연한 도래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인 만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전액 신규 편성한 사유와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차량 및 주요 의료장비의 교체 시기를 사전에 파악하여 중기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국·시비 보조사업은 상급기관의 확정·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조정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어 금번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됨. 다만 일부 사업은 본예산 대비 증액 규모가 크고 사업비 부족으로 증액 편성하였는 바, 단순히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당초 사업수요 산정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추경의 성격상 불가피한 변경내시 반영과 실제 수요증가에 따른 증액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업비를 추경에서 보완하거나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미지급금 형태로 사후 편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적정성 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향후에는 최근 사업집행 실적과 인구·출생·이용자 증가 추이 등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와 정산, 구비 매칭부담 및 반환금 관리까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